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3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배준영·박정하·이종배

김성원 · 조경태 · 이양수

김도읍 • 곽규택 • 송석준

박준태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단순히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와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항 주변지역을 상생·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있음.

아울러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13개의 지방공항 중상당수는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운영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와 연계·융합되어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공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기존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시킬 것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행이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항이 지역과 연계되어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항 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공항경제권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으로,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공항경제권위원 회의 설치 등 운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라.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

- 마. 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일괄협의와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국 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 바.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출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38조).
- 사.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5조).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 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항"이란 여객·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 2. "공항경제권"이란 공항의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성 장·발전을 위하여 공항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항구역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 역을 말한다.
- 3. "공항경제권사업"이란 공항경제권에서 공항과 지역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관광, 교육, 휴양, 상업 및 레저 등을 연계한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를 말한다.

- 5. "사업구역"이란 공항경제권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6. "공항산업"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7.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제15호·제17호·제21호·제23호 ·제26호·제28호·제30호 및 제32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 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 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 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
 -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 공기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사업
 -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개발·활용하는 사업
 - 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3호에 따른 드론산업
 -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 공항,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을 개발・운영・지원하는 사업

- 사.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비행장·공항·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련 제조 ·서비스 산업
- 8. "적합업종"이란 공항경제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산업분야 로 제20조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9. "공항경제권시설용지"란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 10.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1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공항경제권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 제권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 며 공항산업 및 적합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 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항운영자의 책무) ① 공항운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과 운영의 주체 로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출자·출연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 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제2장 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 등

- 제8조(공항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경제권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항 경제권종합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와 중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3. 적합업종 선정과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적합업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항공기정비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진흥, 연구개발, 문화관광의 진흥방안을 포함한다)
- 5.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6.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7.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
- 8. 연계교통시설의 신설 · 개선에 관한 사항
- 9.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 10.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항이 위치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2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한정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항과 공항주변지역 의 경제·산업·인문·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등) ①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공항산업
 - · 항공산업 및 적합업종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제20조에 따른 적합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6. 제43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관할 시 · 도지사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 는 공무원(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 은 소속기관의 장
- 4. 공항경제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공항의 공항운영자
- 5. 항공·도시계획·교통·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공항경제권사 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한 사람
-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항경제권지원단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공항경제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지원단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 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 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 또는 겸임자에게 승진·전보 ·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장 공항경제권사업 제1절 공항경제권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 제14조(공항경제권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항별 공항경제권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
 - 2. 공항경제권사업의 내용, 대상지역 및 면적
 - 3.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 4. 공항경제권 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 5.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방식
 -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7.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8.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등에 관한 계획
 - 9.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 10.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사항(공항경제권시설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11.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12.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 13.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4. 재원조달계획
- 15.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 ⑧ 관할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 권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 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 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계획의 제안) ①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 ②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있게 하여야 한다.
 - 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 목적
 -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3.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4. 제30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

목록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제18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 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가 공항경제권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 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항경제권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행위 제한 등)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0조(적합업종의 지정) ① 관할 시·도지사는 수립된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에 대한 적합업종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 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된 적합업종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절 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 및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

- 제21조(공항경제권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항운영자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공항 경제권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 년 이내에 공항경제권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거나 같은 조에 따라 승인 받은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 우
- 5. 제24조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 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항경제권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우(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7. 사업시행자가 제34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경제권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21조제2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22 조제1항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항경제 권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

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하다.
-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관할 시·도지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 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

권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항경제권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항경제권사업의 명칭
-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4.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 5.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계획
-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 7.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 8.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 9.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

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항경제권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로 한정한다)

- 4. 사업시행자가 제34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할 시·도지사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허 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의 인가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 획의 승인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 19.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 인
-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 22. 「자연공원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
- 25.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

인

-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 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 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 축허가등의 동의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실 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제2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 야 한다.
 -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항경제권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27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를 적용한다.

제3절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

- 제29조(공항경제권사업의 총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경제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사업계획 수 립단계부터 공항경제권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구역에서의 공항경제권사업의 총괄관리
 -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 4. 공항경제권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 안 마련
 -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 7. 그 밖에 공항경제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7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 제31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있다.
- 제3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

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항운영자
- 4. 지방공기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원

형지 개발 방향, 공급계획,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원형지 개발방향
- 2.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원형지개발자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 1.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개발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원형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 우
- 3. 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원형지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 4. 그 밖에 원형지를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37조(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제38조(비용의 부담 등) ①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및 출자·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 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제4절 준공확인 등

- 제39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준 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경제권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 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공항경제권사업이 승 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 다.
 - ③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항경제 권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 25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 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공항경제 권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

- 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관할 시·도지사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관할 시·도지사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공 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공항경제권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 ②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 제4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기금조성과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

- 자의 공항경제권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공항경제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공항경제권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공항산업과 항공산업의 육성과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40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시·도지사는 공항경제권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장 보칙

- 제46조(청문) 관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 2. 제24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 제47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은 관할 시·도지사의 인 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2.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업구역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2.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위반한 자

- 3.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 2.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
 -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
 - 4. 제27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